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27

2021년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찬성자 47명)

나. 제 출일: 2021년 2월 2일

다.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라. 상 정 일 :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바, 이에 위촉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 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공익사업선정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4조)뿐만 아니라「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의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u>공익사업선정위원회</u>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u>,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 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나. 내용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제5항에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사유를 두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도 위원의 결격사유 외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두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 ① 시장 등은 <u>위원화를 설치할 경우</u> 다음 각 호의 시항을 <u>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u>.
 - 4. 위원의 <u>결격사유</u>, <u>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u>,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패영항평가"를 통해 '심사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 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2021.1) 권고사례〉

의뢰법령	문제점 및 권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문제점) 위촉위원의 자격 불명확, 임기규정 미비,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부채 등 심사·의결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저하 우려
	(권고안) 심사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이에 따라 조례에 위원의 결격사유(제4조)만을 두고 있는 공익사업선정 위원회가 제착·기피·회피 사유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동 법에서는 이에 대한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 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¹).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심의대상 : 12개 분야 390개 사업 8,673백만원

○ 심의결과 : 164개 사업 2,260백만원(심사건수 대비 42%)

(단위:건/백만원)

사 업 유 형	76	신 청 사업수		신 청		신 청	선정	현황	1단체 당
(선정 건, 지원금액)	구분			금 액	건 수	지원금액	평균지원액		
합계		390		8,673	164	2,260	13.9		
문화·관광도시	신규	30	57	664	14	210	15.0		
(23개, 338백만원)	기존	27	37	621	9	128	14.3		
장애인 복지 · 인권 신장	신규	19	34	381	9	120	13.4		
(15개, 183백만원)	기존	15	34	306	6	63	12.6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신규	8	10	207	4	65	16.3		
(5개, 73백만원)	기존	2	10	37	1	8	7.6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신규	20	41	399	10	126	12.6		
(17개, 219백만원)	기존	21	41	450	7	93	13.3		
아동·청소년 지원	신규	22	36	479	11	151	13.7		
(15개, 209백만원)	기존	14	30	282	4	58	14.6		
시민의식개선	신규	24	45	494	12	156	13.0		
(19개, 255백만원)	기존	21	40	481	7	99	14.2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신규	8	20	213	5	67	16.8		
(9개, 171백만원)	기존	12	20	271	4	104	14.0		
교통・안전	신규	9	25	249	5	79	15.7		
(10개, 151백만원)	기존	16	25	347	5	72	14.3		
통일 · 안보	신규	14	36	275	7	87	12.4		
(15개, 143백만원)	기존	22	30	503	8	56	14.8		
북한이탈주민 지원	신규	4	12	113	3	36	13.7		
(6개, 73백만원)	기존	8	12	178	3	37	14.6		
환경보전·자원절약	신규	13	26	276	7	87	12.4		
(11개, 150백만원)	기존	13	²⁶	306	4	63	15.8		
기타공익사업	신규	23	40	546	11	172	15.7		
(19개, 295백만원)	기존	25	48	595	8	123	15.4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u>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u>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020년(제11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명단〉

(2020, 12월)

					(2020.	
연번	성 명	성별	생년	경력사항	임기	비고
1	000	男	1957	現)(재)유더블유씨코리아나은재단 이사장 現)(주)대도산업개발 대표 現)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2020.12.17.~ 2022.12.16	
2	00	男	1957	現)한양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現)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現)(사)한국녹색도시협회 이사장	"	
3	000	男	1963	現)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現)시단법인 공공자치학회 대표이사 現)(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감사	"	
4	000	女	1970	現)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現)(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現)새만금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5	000	女	1971	現) 멋진사람들 대표 前) 착한사람들 부회장	"	
6	000	女	1973	現)(사)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現)행정안전부기부심사위원	n,	시민 단체
7	000	女	1973	現)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과장 前)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팀장 前)이름다운재단 1%모금팀. 배분사업팀장	"	추천
8	000	男	1974	現)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前)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나눔의집협의회 교육위원	"	
9	000	女	1975	現)한국공공사회학회 부회장 現)청주대 사회학 강사 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10	000	男	1978	現)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現)국기인권위원회 사업심사위원회 위원	"	
11	000	男	1983	現)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공인회계사) 現)(사)한국모금가협회 감사 前)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 근무	"	
12	000	女	1987	現)비소나눔마을 이사장 現)한양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前)KOICA 민관협력 캄보디아 미디어시업형성 조사	"	
13	000	男	1966	現)한상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체육학전공 교수 前)한국체육정책학회 이사	"	
14	000	女	1976	現)법률사무소 화수 대표변호사 現)용인시 법률고문 前)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	시의회 추천
15	000	女	1983	現)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現)(사)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자문변호사	"	

○ 또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의 결정 및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규정 하는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2년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연 번	구분	개최일	본회의 안건명
1	본회의	2019- 02-11	·2019년 <u>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선정계획</u> ·분과위원회구성및운영 ·사업계획수립 컨설팅단 구성
2	본회의	2019- 03-04	·2019년 <u>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단체 최종선정 및 지원액 결정</u>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예비단체 선정 ·2019 선정단체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 실시
3	본회의	2019- 12-16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추진방안
4	본회의	2020- 02-11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심사선정 계획(안) ·분과위원회구성 및 운영(안) ·시업계획수립 컨설팅단 구성(안) ·기타지원사업의 심사선정에관한 사항
5	본회의	2020- 03-04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단체 최종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20 공익활동지원사업 예비단체선정 ·코로나19로인한 영상교육 및 집행일정변경 ·보조금집행지침변경 ·2020 선정단체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 실시

○ 다만, 서울시의 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다른 조례의 경우에도 제척·기피· 회피 규정의 부재 등으로 심의·의결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조례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27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2월 02일 발 의 자 :김정태 의원(1명) 찬 성 자 :강대호,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재형,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런,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유용,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황규복, 황인구 의원(47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바, 이에 위촉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4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신 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신 설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신 설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 신 설 >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 으로 위촉된 경우
	< 신 설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u>한다.</u>